

운
령

기안통지

| | | |
|-------------------|---|-----------------------|
| 문서번호 | 법무 181-2-31 <small>(전화번호 6379)</small> | 전 철 규 정 전 제 사 항 |
| 처리기간 | 시 장 | |
| 시행일자 | 6. 25 | |
| 보존년한 | 1975. 11. 25 | |
| 보조기관 | 제1부서장 기획관리관 법무 담당관 | 11. 25 기안부 법제과장 |
| 기안책임자 | 김광시 | 조 |
| 경수 유 신 참 | 주안참조 | 발 신 장 |



제 목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중 개정유점

(제 1안) 내용결재

1. 법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통제관의 통제
업무 강화와 수도사업소의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2.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중 별첨안과 같이 시행
로지함거라.

첨부 개정유점안

(제 2안)

수신: 행정과장, 시민과장

발신: 법무 담당관

제부: 동, 건

2.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중 별첨과 같이 개정
기로 결정되었기 동로함거라.

첨부 개정유점1부

(제 3안)

수신: 행정과장

발신: 법무 담당관

0001-1-8A (간)
1988. 11. 10. 수100mm x 250mm (세로) 30g/m²
소면기준 3.6

地圖：岩石

1. 산호동호기 흙 속에 고정된 경화나운이 개장

개장되는 곳에

2. 그로인해 지나가니 바람이 든다.

천부 개장되는 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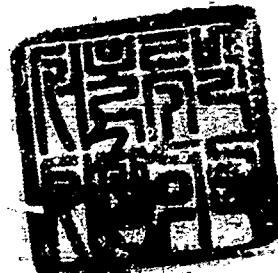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민원사무처리 오령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5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구자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포장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포장증정요령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포장을 수여·증명의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민원사무처리포장(이하 '포장'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포장에 필요한 제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라 함은 구청·구출장소·경찰국·경찰서 및 소방서·보건소·동·기부식조회의 의회·설치된 기관 등을 말한다.
2. 문서 수령처라 함은 전보에서 기재한 기관에서 문서 수령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국 설치가 없는 기관은 행정부서의 처장을 주관하는 게 또는 처장담당자를 말한다.
3. 처장주관처라 함은 행정부서의 처장을 주관하는 국 또는 처장담당자를 말한다.
4. 민원서류라 함은 영이 일자리·민원 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의 처리과정에서 첨부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조(민원접수처의 설정) 지정부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으로서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민원접수처를 설치하고 전국민원증명구역에 배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1) 모든 민원서류는 (이하 '서류'라 한다) 문서수령처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2) 서류의 접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사무처리포장증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접수하는 문서 제2호 서식과 같다.

- 제5조(서류의 관리)
(1) 문서수령처에서 접수한 서류는 '민원서류'로 관리한다.

수령자가 이송 하여 수령한 시류 서류에 주민인을 놓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인과 서류에 표기된 주민인과 다른 주민인은 척의주 관찰과 문서수납처에서 재지간마다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2) 척의주 관찰에서는 시류의 접수 처리 상황을 민원사무처 팀부에 통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즉결민원에 대한 이의) (1) 즉결처리되는 호적 주민등록 병사 인감 관계 등의 계정명과 등, 초본 또는 세무 입찰등의 정구 및 신고로서 서류 척급 전수가 많은 서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척의주 관찰에서 직접 접수 처리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 접수 대장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편함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착오문서의 이송) 동일 기관에서 이송 받은 서류의 처리주 관찰과 다른 때에는 우편지에 그 뜻을 기록하여 즉시 척의주 관찰에 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배부 서류의 이첩) (1) 척의주 관찰에서는 영한 사항으로서 관찰 기관에 이첩 처리로써 람이 보다 신속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된 서류를 이첩 처리하기 할 수 있다.

(2) 이첩은 서류를 배부받은 때로부터 16근 무시간 이내에 이첩 처리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뜻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첩받은 기관은 그 서류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구출 또는 전류에 의한 접수)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구출의 사항은 구출 또는 전류 신청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 시성 : 경력(직직·제직) 증명, 주동차 등록증부 등, 초본, 건축허가서증 증명, 건축물검사증명 고부사실증명, 지방기검정증명증명, 보상금 지급증명

2. 구성 : (경력, 퇴직)증명, 오직증, 초본, 가족 대장등본, 가족 대장증명증명, 고지대장등본, 입주예정증명, 신원증명, 관세부가부증명증명, 건축물검사증명증명증명, 주민등록증명증명증명, 을란증(인세증) 등록

증명, 후생시설증명, 후생시설수용자증명, 주민신장, 금수업종변경신장, 금수동지신장, 금수증자해제신장, 금수전폐전신장, 양수기점정의회, 금수사용로이의신장, 정수처분, 해제신장, 금수사용료납부증명.

3. 동 : 주민동록등, 토보, 기주증명, 주소증명, 금장동록증명, 생산실
적증명, 토가증명, 계좌개설증명, 고액증명, 요구호자증명,

4. 보건소 : 정부(의회, 재회) 중명, 척률·영업허가(유업·폐업) 사실증명
이, 미승인허가(유업·폐업) 사실증명

(2) 전황각호의 해당 사항은 수수로 남부를 요하는 사항은 중명교부시 또는
수전에 수수로를 칭구하여야 한다.

(3) 구을 또 노 전학에 의한 미술 사학자 리부는 당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4) 제2항의 민원사항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주 관청에서 주체 징수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된 서류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서식) (1) 민원 서식은 민원사무 담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의 다른 서식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민원서식을 인쇄 또는 유인 할때는 별지 제4호 서식 '공통규격서'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3) 민원을 접한 때 또는 유언할 때에는 그 후면에 민원서식 편집에 있는
한글판을 이해하여 시민이 그 처리 과정을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찰서적 관점 이론의 적용한 서사학 사용과 전작을 재정할 때에는
전작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한다.

제11조(민원사무 관리) (1) 민원사무 관리는 본청, 구청, 동,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민원부서~~에서 행한다.

(2)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차운다.

(3) 경유, 진당, 조의, 협조 등에 관한 서류는 용서문서로 그 내용이 민원에 관계되는 서류일 때에는 민원서류로 취급한다.

제12조 (기간 설정 및 서류보관) (1) 문서 주체가 이전을 접수한 서류마다 민원기한에 정하여진 처리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민원사무 연장에 없는 구별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한 보관을 요구 받을 수 있다.

(3) 구별서류 등 서류의 보관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를 베부본은 8근무시간내에 보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2회 이상 보존용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함 경우에는 반복 할 수 있다.

제13조 (점의) 점의를 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점의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기관 장관(국, 주) — 16근무시간이내

2. 기관상호관 — 4일이내

제14조 (처리기간의 연장) 전항 또는 이와 유사한 민원사무 처리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그 처리에 장애일을 오마는 것은 실제 소요일주로 한다.

제15조 (처리기간의 연장) 기한을 지를 학교자 학교는 당해 민원사무의 최종 결재권자의 차장급자의 결재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당해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학교로 한다.

제16조 (민원사무 통제) (1) 영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기관은 고지통제권의 이를 걸친다. 다만, 소방본부 및 경찰국에는 본 임민원통제권을 갖고 할 수 있다.

(2) 민원사무를 제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걸친 후 통제하여야 한다.

1. 경제권자의 결재 여부

2. 처리기간의 경과 여부

3. 조건통지 기관의 결재 여부

4. 각자본부(본부) 관할 기관의 결재 여부

5. 이전기준의 경과여부

6. 민원서류 표시인의 날인 여부

7. 협조기간의 준수 여부

(3) 위원사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한 징정조치를 함께 동시에
에 놓아거나 그로 인해 서식의 고갈이나 풍해부의 기세학과 대처 등을 집중하여 조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득 윤 및 원본 기초 치) (1) 민원사무 흥행관은 차미기준의 조치와 동시에
이 두 육장을 일부하여야 한다.

(2) 보원을 요청하였거나 차미 자연 용지를 한 민원 사항은 그 처리기일이 경
과하면 자연으로 간주하여 두 육장이 약 한다.

(3) 두 육장은 3회에 한하여 일부 하되 1차 육장, 2차 육장, 3차 육장으로 한다.

(4) 3회 이상의 두 육장을 끝은 민원은 법지재판소 서식의 검열부 약 기세학이 1회
이상 실과장이 직접 검열하여야 한다.

(5) 민원사무 흥행관은 민원서류의 자연 용지를 위하여 유행 육장 상황을 집
계하여 차미기준에 통보한다.

(6) 민원사무 흥행관은 차미기준을 초과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차미 증정자 및 상급자에게 다음 기준의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준일수 | 조치 내용 |
|---------|--|
| 1~2 일 | 1회 : 담당자 주의 |
| 3~4 일 | 1회 : 담당자 신고서 2회 : 개장 시보서 |
| 5일 이상 | 1회 : 담당자 강고 2회 : 개장 경고 3회 : 폐장주의 |
| 6~7일 이상 | 주의 : 경고 |
| 8일 이상 | 시보서 또는 경고 : 경계 요구 |

(7)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초과한 민원서류는 기한문에 지연처리인을 놓고
지연일수를 기입하여서 하며 주의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자는 광기관의 민원
사무를 직권이 걸쳐 두하여 직급 조치하고 그 걸쳐는 인사 담당부서에 통보
하여 고속에 단정로록 하며 징계에 해당하는자는 인사 담당부서에 통고하여
징계 요구로록 한다.

제18조 (치리상황검열) (1) 고장장 및 주사업장을 주관하는 본청 및 과장은 민원
사무 처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민원상황검열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검열
하여야 한다.

(2) 지장은 산하 전기관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검열 또는
지도 확인을 실시한다.

제19조 (검열결과조치) (1) 지장 및 구청장은 검열결과 예방시설이 불편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부서의 책임공무원과 그 직근 상급자 및 민원사무
통계관을 징계 조치하고 구청장의 징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구기관의 장은 검열결과 개선을 위한 상향이 불편 되었을 경우에는 시
장에게 개선 요구하여야 한다.

부 록

- (1) (시행일) 이 요령은 불령안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규정) 훈령제377호(78. 6. 12)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은 이를 폐지한다.
- (3) 이 요령 시행이전에 발생된 문제, 예고, 지침, 기타 종합은 이 요령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이 요령 시행전에 접수한 서울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韓文類編》

제12회 제작자, 배우, 티·부

2003-6-10 (1)

9.11.30 完成

제1판 제2판 제3판

520mm × 35mm (무게 70g/m²)

005

제1편 내부 제7장 문서

(한국어 번역 서식)

| | |
|--------------|-----|
| 기수증번호 | 출원인 |
| 제 목 | |
| 소관처 | |
| 접수증 | |
| 기수증번호 | |
| 제 목 | |
| 소관처 | 파재 |
|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 |
| 197 . . . | |
| 위증자소속 | |
| 접수일 | |
| ① | |
| 접수장 | |

(জ্ঞান পুস্তক মন্দি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 한자리부

1038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서식 분류규정서

1. 민원서식 : 민원사무원의 턴위, 민원사무원의 업무를 조
2. 용지의 크기 : 190mm×268mm로 원자료로 다이아蜷으로 주 이거나 확대하여 사용함.
3. 지질 및 평양 : 신문용지 50g/m²은 원자료로 다이아蜷으로 주 사용됨에 따라 배상지(60g/m²) 또는 박일지(193g/m²)로는 주지할 수 있음.
4. 용지의 색채 : 흑
5. 활자의 색채 : 흑
6. 활자의 크기 및 종류

서식의 크기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정하되 그 고지제도
활용 원칙으로 하고 기타는 다음에 따르나.

| | |
|-----|-----------------|
| 제 목 | 14급 활자 고딕체 |
| 발급자 | 14급 활자 영조체 |
| 내 용 | 10.5 또는 9급 활자 " |
| 기 타 | 7급 활자 " |
7. 서식의 의뢰인

| | | |
|-----|--------------|------|
| 용 지 | 상단부터 상부기본선까지 | 36mm |
| | 라인마디 하축기본선까지 | 25mm |
| | 우단부터 우축기본선까지 | 20mm |
| | 하단부터 하단한계선까지 | 15mm |
8. 서식의 실제 규격 : 190mm×213mm
9. 서식의 하단한계선 기록에 용지의 크기 및 서식의 질량을 인쇄하고, 하축에는 서식의 높이번호 및 송인인자로 기재하여야 함.
10. 민원서식 이면에 차단파생도표를 일체하여야 하며, 복사본 하거나 또는 이면에 신청내용을 인쇄해야 한다.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편 내부 제 7장 문서

(별지 제5호 서식) (① 원통지시서 「황색」)

| 사용자번호 | 사용자명 |
|---|---|
| 민원서류번호 별호 | 197 민원서류번호 |
| 발송일 별호 | 수신 제목 내용 제주 민원서류보 비비사항 |
| 수신 제목 내용 제주 민원서류보 비비사항 1. 2. 3. | 1. 경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다음 사람이 미비되었으나 보완하시어 70 가지 제출하 여 주시면 처리하여 드리고자 하 니다. 미비사항 (1) (2) (3) |
| 제출인자 소속 | 2. 지정 기일까지 미비사항 유체하지 못하신 사실이 있을 때 에는 사건에 일관된 바와 같이 아예 담당이 없을 때에 신청의 사실 가 있는 것으로 간주 관리하기로 하 니다. 소속 차명 성명 |
| 담당자 직명 성명 | "주의사항" 보위서류 제출시에는 본 장지사의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3-6-3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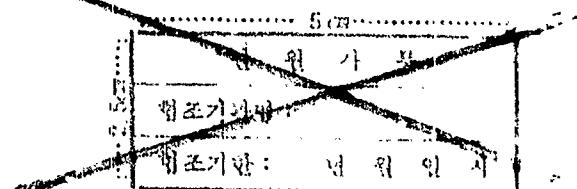
69.11.30 송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²)

933

0057

(卷之三)



(법자) 제6회 서식)

卷之三

• 114 •

1.50u/(u²)

2003-01-01 (1-5)

$19.6 \text{ cm} \times 26.8 \text{ cm}$ (31 V-31-315C-L/mm)

0058

개정 이유

1. 구청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수도사업소가 구청으로 통합됨에 따른 업무 내용의 조정과 -
2. 확장문서의 반송, 이첩, 보완통지등의 지연으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도축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사무 통제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처리기간의 도축과 동시에 담당장을 일부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자 함에 있음.
3. 보조기관인 경찰국, 소방본부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임 민원사무통제관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여 업무능률의 증진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음.
4. 혼령제384호(시.읍.면.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 세칙)는 지자체와 동시에 본 혼령에 포함 운용하자 함.

56-60

서 울 특 텁 시

행정 180-~~XXXX~~

75-6193

1975. 9. 15.

수신 거제관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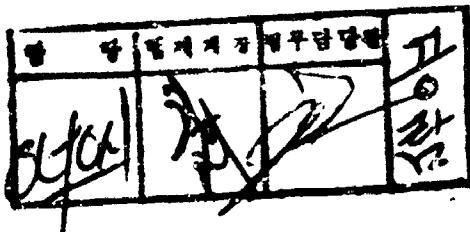
참조 법무 담당관

제목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1. 법무 180-693 (75. 9. 5)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민원 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및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법무 1.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1부. 끝.



부 국 장

대
지방행정사무관 은 순화

0060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제384호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제384호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제384호의 구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제384호의 구정 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2. 구정

"경력(퇴직·재직) 중정, 호적등록본, 가족 대장 등본, 가족 대장 등재부 안증명, 로지대장등본, 일야대장등본, 신원증정, 건축 이가 사실증명, 건축물 검사결정 그우 사실증명, 주택등록 양급 환급증명, (율관사, 인쇄소) 등록증정, 우생식증정, 우생시설 수용자증명, "을 경력(퇴직·재직) 중정, 호적등록본, 가족 대장 등재부 안증명, 로지대장등본, 일야대장등본, 신원증정, 건축 이가 사실증명, 건축물 검사결정 그우 사실증명, 주택등록 양급 환급증명, (율관사, 인쇄소) 등록증정, 우생시설 수용자증명, 우선신청, 금수업종 연장신청, 금수동지 신청, 금수동지연장신청, 금수전 매연신청, 양수 거점점의회, 금수 사용료 이외신청, 경수처 윤여제 신청, 금수 사용료 납부증 증명"으로 한다.

5. "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6조 (헌법재판소 헌법)

- (1) 구정 제13조의 구정에 의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 이를 결안하"를 "구정 제13조의 구정에 의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 이를 결안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경찰국, 소방본부에 본입헌원 헌법재판을 헌안"으로 한다.
- (2)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로 한 후 헌법재판어야 한다.

1. 경제결자의 경제 여부
 2. 차이기간의 경과 여부
 3. 협조 기간의 흔수 여부
 4. 전현서증 표시인의 날인 여부
 5. "별도 차이인의 날인 여부"를 전현서부 통계관(본입 전현서부 통계관
포함)은 통계 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통계하여야
한다.
1. 경제결자의 경제여부
 2. 차이 기간의 경과여부
 3. 보완문지 기간의 경과여부
 4. 확보 본부 이송된 민생현황의 만족 기간 경과여부
 5. 이월기간의 경과여부
 6. 전현서증 표식인의 날인 여부
 7. "별도 차이인의 날인여부"
 8. "별도 기간의 흔수 여부"로 한다.

조 문 예 미 료

| 법령 | 개정 |
|---|--|
|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u>시행세칙</u> 제9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2. 구 청 정부(회칙·재직) 출정, 오직통로본, 가족 대장통본, 가족 대장통재주인 증명, 호지대장통본, 일자대장통본, 신현증명, 건축 이가사설증명, 건축 증정사설증 고우사설증명, 주민 등록증 신설, 원남증명, (을 관사, 은 인쇄소) 등록증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정 |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2. 구 청 파동 수선신청, 금수업종변경신청, 금수 증거신청, 금수증지 이체신청, 금수 전액판 신청, 양수기 증정, 회의, 금수 사용료 이의신청, 정수처분 이체 신청, 금수 사용료 납부증명 |
| | 6666 |

| 연 도 | 기 정 |
|--|---|
| 5. 수도사업소 | 5. 산 지 |
| 제 16조 (민원사무 통제) | 제 16조 (민원사무 통제) |
| (1) 구청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통제관은 물서통제관 이 이를 경완다. | (1) 구청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통제관은 물서통제관 이 이를 경하고 청구의 특수성 에 비하여 소방본부, 경찰국에 분임 민원통제관을 한다. |
| (2) 민원사무통제관은 통제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1. 경제권자의 경제여부 2. 차이기간의 경과여부 3. 협조기간의 준수여부 4. 민원서류 표시인의 날인여부 5. 협조 차이인의 날인여부 | (2) 과 동 1. 경제권자의 경제여부 2. 차이기간의 경과여부 3. 보완통지기간의 경과여부 4. 협조본부 문서(민원) 반송 기간 의 경과여부 5. 이월기간의 경과여부 6. 민원서류 표시인의 날인여부 7. 협조 차이인의 날인여부 8. 협조 기간의 준수여부 |

기 정 이 유

1. 구청직계 기관으로 인하여 수도사업소가 구청으로 통합됨에 따른
일부 내용의 조정;
2. 시장 보조기관인 경찰국, 소방본부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하여
분임 민원사무통제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구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업무능률의 증진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음

서 울 특 별 시

행정 180-~~1111~~

75-6193

1975. 9. 25.

수신 기획관리관

발신 법무 담당관

제목 택민관계 행정법률 권리

1. 법무 180-693 (75. 9. 5)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민원 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및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개정안을 제출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1부. 끝.

[Handwritten signature]

내부국장장

1975. 9. 25.
1975. 9. 25.
서울특별시
법무회

24
지방행정사무관 윤순화

0064

민원사무 처리 요령 개정안

서울특별시 문령 제352호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 요령을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항 1호 기관중 "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제 4조 (주총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2. "오직동·오촌, 가족 대장동본, 가족 대장 통재 주민증명, 토지대장 등본, 일아대장 등본, 신원증명, 건축 이가 사실증명, 건축물 검사증명 고부 사실증명, 주택분 양금 환납증명, (용문사, 인쇄소) 등록증명, 우생시설 수용자 증명"을, "오직동·오촌, 가족 대장동본, 가족 대장 통재 주민증명, 토지대장등본, 일아대장등본, 신원증명, 건축 이가 사실증명, 건축물 검사증명 고부, 사실증명, 주택분 양금 환납증명, (용문사, 인쇄소) 등록증명, 우생 시설증명, 우생시설 수용자 증명, 수선신청, 금수업종 신경신청, 금수종지신청, 금수증지 신청, 금수 판매전 신청, 양수 기업점적의, 금수 사용료 이의 신청, 경수 거래 예약 신청, 금수 사용료 납부증 증명"으로 한다.

5. "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제 11조 (특록 및 결별) 중 "특록 및 결별"을 "(특록 및 확인자 표지)"로 하고

- (1) 문서 등재관은 이미 기간의 유효과와 동시에 완결시까지 예인 특록 안내"를 민원사무 등재관은 이미 기간의 유효과와 동시에 특록장을 일부 한다"로 한다
- (3) "특록장 구분은 경지 서식 3호에 의하여 1자 빅색 2자 회색, 3자 연두색, 4자 빨강, 5자 블루 색"을 특록장을 2회에 의하여 일부 하회 1자 빅색 2자 빨강, 3자 블루 색으로 한다"

(7) "문서 통제관은 규정 및 세칙과 이 요령에 의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 담당부서에 의뢰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자는 각 기관의 문서 통제관이 경제를 통하여 직접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고과에 반영도록 한다"를 민원사무 통제관은 차미 기간을 초과한 민원서류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2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차의 담당자 및 상급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지연 일수 | 기간 | 조치 내용 |
|-----------|----|--------------|
| 1 ~ 2일 지연 | | 1회 : 담당자 주의 |
| 3 ~ 5일 지연 | 월 | 1회 : 담당자 시망서 |
| | 월 | 2회 : 재장 시망서 |
| 5일 이상지연 | 월 | 1회 : 담당자 경고 |
| | 월 | 2회 : 재장 경고 |
| | 월 | 3회 : 과장 주의 |

월 3회 이상 주의 : 경고

월 3회 이상 시망서 또는 경고 : 징계요구

(8) 제7항 다음에 제8항 민원서류 차미기한이 초과한 민원서류는 기한문에 지연 차이인 (별지서식)을 첨고 지연일수를 기입하고 주의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자는 각 기관의 문서통제관이 경제를 통하여 직접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고과에 반영도록 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로 한다"를 신설한다.

주 제

1. (시행일) 이 조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2. (공포조치) 이 조령은 시행전에 징수한 서류의 처리는 통권회 예에 의한다.

조 문 대 의 조

| 편 행 | 기 정 |
|---|---|
| 서울특별시민원사무 처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기관 : 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요령 제2조 1. 기관중 수도사업소를 삭제 |
| 제4조 (구슬 또는 전화에 의한 징수) 2. 오직통로본, 기록 대장통본, 가족 대장통재 우편증명, 흐지대장 통본, 일아대장통본, 신경증명, 전화 이가사설증명, 전화를 거사 한증고부사설증명, 주택분양금 환납증명(율관사 인쇄소)등록 증명, 우생시설 수요자증명 | 제4조 (구슬 또는 전화에 의한 징수) 2. 오직 수신신청, 금수업종변경신청, 금수증지 제재신청, 금수 폐건신청, 양수 기관정 의회, 금수 사용료 이의신청, 정수 어온 액세신청, 금수 사용료 납부 및 증명, |
| 5. 수도사업소 | 5. 산 재 |
| 제11조 (목록 및 경영) ·(1) 물서를 재관은 처리기간의 초 과와 동시에 환경시까지 매일 물서 한다. (2) 목록장 구분은 별지서식 3호 에 의하여 1자 빨색, 2자 회색, 3자 연두색, 4자 뉴색, 5자 블루색 으로 한다. | 제11조 (목록 및 경영) (1) 민원사무 중 재관은 처리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목록장을 발부한다. (2) 목록장은 3회에 한하여 1자 빨 색, 2자 회색, 3자 연두색, 4자 뉴색, 5자 블루색으로 한다. |

(7) 투서용 재관은 규정 및 세칙과
이 호령에 위반하여 경계사용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계
담당부서에 회피하고 경고에 해당
하는 자는 각 기관의 투서용 재관
이 경재를 둑하여 적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사 담당부서에 통고
하여 고과에 반영도록 한다.

(8) 민원사무용 재관은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사무 (서울특별시 민원
사무 처리규정 시행령 제16조 2항)
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치
더 담당자 및 상급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지연일수 | 조치 내용 |
|----------|---|
| 1~2 차례 | 1회 : 담당자 주의 |
| 3~4 차례 | 2회 : 담당자 시망서 2회 : 계장 시망서 |
| 5일 이상 차례 | 1회 : 담당자 경고 2회 : 계장 경고 3회 : 과장 주의 |

(8) 선상

월 3회 이상 주의 : 경고

월 3회 이상 시망서 또는 경고 : 정계

요구

(9)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초과한
민원사무는 기한을 예 치연처리인
를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기입
하고 주의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자는
각 기관의 투서용 재관이 경재를 둑
하여 적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사
담당부서에 통고하여 고과에 반영로
록 하여야 하며, 정계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 담당부서에 통고하여 정계 요구